



2025

**박사과정  
전문연구요원  
복무 안내서**

<b>박사과정 전문연구원 제대로 알기</b>	<b>05</b>	<b>04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?</b>	<b>28</b>
<b>01 편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?</b>	<b>06</b>	4-1 박사학위 취득 후 당면전직 하여야 합니다.	
1-1 편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		4-2 '23년 편입자부터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되었습니다.	
1-2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		4-3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	
<b>02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?</b>	<b>10</b>	4-4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	
2-1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.		<b>05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나요?</b>	<b>36</b>
2-2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		5-1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.	
2-3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		5-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	
2-4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.		<b>06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?</b>	<b>42</b>
2-5 대학원장(지도교수)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		6-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.	
2-6 전문연구원 권익보호를 위한 '권익보호 상담관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		6-2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.	
<b>03 출장·파견은 어떻게 가나요?</b>	<b>20</b>	<b>07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?</b>	<b>46</b>
3-1 출장·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		7-1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	
3-2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		7-2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	
3-3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		7-3 국외여행기간 중 허가목적대로 업무수행 등을 해야합니다.	
		7-4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.	

# 목차

---

## 08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? 54

- 8-1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.
- 8-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- 8-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.

## 09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 60

- 9-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됩니다.
- 9-2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.

## 10 어떤 경우에 편입취소 되나요? 64

- 10-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.
- 10-2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의무부과 됩니다.
- 10-3 편입취소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.

## 11 복무만료 후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? 70

- 11-1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.
- 11-2 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


#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대로 알기

# 01

## 편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?

- 1-1 편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-2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대학원 (과학기술원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이라 함)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. (단, 군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)



## 1-1 편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## 복무기간은 1-2 다음과 같습니다.

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(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)을  
수료한 사람

- ▶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

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

- ▶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연계대학원 기초의학분야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

병역지정업체(자연계대학원의 연구실)에서  
3년간 연구인력으로 복무

- ▶ 다만, '23년 1월1일 이후 편입자부터는 편입일 이후 2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 됩니다.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.

편입대상자 선발

-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매년 배정된 인원의 범위 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별도 선발전형(TEPS, 출신 대학원 성적, 3급 이상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취득)으로 선발하여 편입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원은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 중 선발하여 편입 →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 편입 대상자 선발,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 편입

# 02

##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?

- 2-1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2-2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
- 2-3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
- 2-4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.
- 2-5 대학원장(지도교수)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2-6 전문연구요원 권익보호를 위한 '권익보호 상담관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 대학원 (과학기술원 포함하며 이하 대학원이라 함)에서 허가된 연구 분야와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.
-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- 편입당시 대학원에서 근로시간 중 승인받은 업무분야에 복무하지 않게 되면 편입취소 및 고발되므로 대학원장(지도교수)이 위법·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특히,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편입당시 대학원에서 허가된 연구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(3년 이하의 징역)을 받게 됩니다.
-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보충역 대체복무자로서 일반 박사학위과정 학생과 구별됩니다.

## 2-1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.

## 근로시간은 2-2 정해져 있습니다.

###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할 수 있는 일

※ 편입 당시 대학원에서 허가된 연구분야(전공분야)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

※ 전직, 파견, 출장, 국외여행 등으로 지정된 연구장소를 벗어날 경우에는 승인, 신상변동통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

#### \*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

- 대학연구기관(과학기술원 포함)장이 두뇌한국 21계획에 따른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
- 자연계대학원(과학기술원 포함)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학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

### 1일 근로시간 : 8시간

※ 09시까지 해당 대학원의 승인받은 연구실/실험실에 출근하여 18시까지 허가받은 분야에 성실히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

### 주 40시간 유연근무 가능

※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. 이 경우 1일 복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복무시간이 주 40시간에 모자란 경우 누계 8시간을 무단결근 1일로 계산함

※ 1일 근로시간 산정 시 중식 및 석식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중식 시간은 11:00~13:00 사이의 1시간, 석식 시간은 18:00~20:00 사이의 1시간으로 한다.

## 2-3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

### 함께 할 수 없는 업무

- ▶ 민법·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·감사·상무·전무 등 임원
- ▶ 편입당시의 연구분야가 아닌 사무관리, 영업 등 다른 업무
- ▶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교원

### 함께 할 수 있는 업무

- ▶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경우
  - ※ 근로시간 이후라도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 영리활동은 엄격히 금지됨

### 개인 영리활동 금지

- ▶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 금지

##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-4 처벌을 받습니다.

### 병역법 위반으로 편입취소, 연장복무 등의 처벌을 받음

<대학원장의 지시에 의거 부득이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>

유형	내용	처리기준	
		위반기간	의무자
1. 편입 당시 병역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	가. 전직·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나.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 훈련, 출장, 파견근무를 한 경우		연장 복무
		3개월 이상	연장 복무
		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경고
		1개월 미만	시정
2.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	가. 편입당시의 연구분야 외의 분야(사무직, 영업직 등 다른 분야)에 근무하게 하면서 근무를 겸하여 시킨 나. 편입당시의 연구분야가 아닌 다른 연구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근무를 겸하여 시킨 때		연장 복무
		3개월 이상	연장 복무
		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경고
		1개월 미만	시정
3. 겸직금지 규정 위반	병역지정업체의 이사·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·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	1개월 이상	연장 복무
		1개월 미만	경고
4. 수확규정 위반	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확한 경우		연장 복무
5. 동일사할 반복 위반	가.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.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.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		편입 취소
			연장 복무
			경고

\* 병역지정업체장 : 자연계대학원장, 과학기술원장

\* 편입당시 해당분야 : 박사학위과정 연구분야

## 2-5 대학원장(지도교수)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의무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—

- ❖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신고한 경우에는 연장 복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—

- ❖ 복무위반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
- ❖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
- ❖ 병무청 홈페이지, 전화, 서신 등 모든 매체 활용 가능

TIP

### 복무위반행위 신고화면 들어가기

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 : <http://www.mma.go.kr>

▶ 병무민원 → 민원안내 → 국민신문고 → 신고 및 제보 → 신청

실태조사관 신고조사 —

- ❖ 보안유지 조사 → 신고자 신분상 불이익 방지
- ❖ 신고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태조사 → 조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

신고조사 결과처리 —

- ❖ 실태조사 결과 업체(대학원장)가 고발, 경고,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, 신고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의 책임이 면해 집니다.

## 2-6 전문연구요원 권익보호를 위한 '권익보호 상담관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# 고충상담 절차

❖ 전문연구요원이 권익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

- ▶ 해당 병역지정업체 관할 지방병무청 권익보호상담관에게 연락하여 권익침해사례 설명
- ▶ 권익보호상담관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「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·처리부」를 관리하고,
- ▶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(필요시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)하여,
- ▶ 권익침해가 사실대로 확인될 경우 화해, 전직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함

### 병역의무자 사후 지원

❖ 고충상담을 신청한 자 중 감정손상 등 복무전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, 권익보호상담관은 대면·통화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

## 지방청별 권익보호상담관 연락처

청별	전화번호	청 별	전화번호
서 울 지방 병 무 청	02)820-4563, 4411-2, 4425	충 북 지방 병 무 청	043)270-1352, 1311
부 산 · 울 산 지방 병 무 청	051)667-5258, 5322	전 지 방 병 무 청	063)281-3312, 3157
대 구 · 경 북 지방 병 무 청	053)607-6313, 6282, 6284	경 지 방 병 무 청	055)279-9314, 9255
경 지 방 병 무 청	031)240-7258-9, 7287	제 지 방 병 무 청	064)720-3255, 3217
광 주 · 전 남 지방 병 무 청	062)230-4315, 4254, 4355	인 병 무 지 청	032)454-2313, 2283-4
대 전 · 충 남 지방 병 무 청	042)250-4314, 4453, 4256	경 기 북 부 청	031)870-0810, 0253
강 원 지방 병 무 청	033)240-6309, 6255, 6266	강 원 영 동 청	033)649-4216

### TIP

#### 권익침해신고화면 들어가기

- 병역일터(홈페이지) : <http://work.mma.go.kr>
- ▶ 병역일터 → 권익침해신고

# 03

## 출장·파견은 갈 수 있나요?

- 3-1 출장·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
- 3-2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- 3-3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- 의무복무 중 해당 연구분야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·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.
- 의무복무기간 중 출장·파견근무 할 수 있는 기간은 통틀어 2년입니다.
- 출장·파견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 및 근무지 등을 포함하는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출장·파견근무한 경우에는 연장복무처분 될 수 있으니 대학원에서 출장·파견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

### 3-1 출장·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

###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3-2 정해져 있습니다.

국내 교육훈련 :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

국내 파견근무(출장 포함) :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

#### 승인절차

- ▶ 3개월 이상 국내 교육훈련과 파견근무 : 승인
  - 대학원장이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파견
- ▶ 3개월 미만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, 병역지정업체간의 파견근무 : 신상변동 통보
  - 대학원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
- ▶ 7일 이내 국내 교육훈련·파견근무 : 복무기록표에만 기재
  - 대학원장이 복무기록표에만 기재

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▶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의 출장
- ▶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
- ▶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·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

출장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▶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
- ▶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 판촉사원 활동

### 3-3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#### 파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▶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간의 파견
- ▶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간 또는 동일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
- ▶ 동일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 에서 정한 연구소
- ▶ 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같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로의 파견
- ▶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

#### 파견제한 사유

- ▶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가 4촌 이내 혈족인 해당 업체로의 파견
- ▶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이 회수되거나 그 해의 인원 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

- ▶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 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
- ▶ 파견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

#### TIP

#### 업무처리 사례

**사례1)** 전문연구요원이 출장(월~수), 사내 근무(목), 출장(금~목) 형태로 2주간에 걸쳐 출장을 간 경우

⇒ 일수계산 : ① 사내 근무(목)으로 인해 연속하지 않은 출장임.

②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사내 근무 이전 출장(월~수)은 출장일수 합산 3일, 사내 근무 다음날부터의 출장(금~목)은 출장일수 합산 5일 (토·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)

⇒ 복무기록표 기재(출장을 2회(3일 출장, 5일 출장) 간 경우로서 복무기록표에 출장 2회 기재)

⇒ 위반시 행정조치 : '시정'(6-가)

**사례2)** 전문연구요원이 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

⇒ 일수계산 :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첫주 출장일수 합산(4일),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(2일)하여 6일(토·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)

⇒ **복무기록표 기재**(토·일요일 포함하지 않고 6일간 출장임, 복무기록표에 출장 1회 기재)

⇒ 위반시 행정조치 : '시정'(6-가)

**사례3)** 전문연구요원이 월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

⇒ 일수계산 :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첫주 출장일수 합산(5일),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(5일)하여 10일(토·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)

⇒ **신상변동통보**(10일간 출장이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)

⇒ 위반시 행정조치 : '시정'(1-다)

**사례4)** 전문연구요원이 월~금 출장 후,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는 사내로 출근했다가 다시 오후에서부터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

⇒ 일수계산 : ① 둘째 주 월요일도 출장에 해당함.

②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첫주 출장 일수 합산(5일),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(5일), 그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(5일)하여 15일(토·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)

⇒ **신상변동통보**(15일간 출장 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)

⇒ 위반시 행정조치 : '주의'(1-다)

**사례5-1)** 전문연구요원이 22년 10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

⇒ 일수계산 : ① 훈령 제32조제9항에 따라 10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월

②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(토·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)

⇒ **신상변동통보**(2월 10일(①+②)간 출장 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)

⇒ 위반시 행정조치 : '경고'(1-다)

**사례5-2)** 전문연구요원이 22년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

⇒ 일수계산 : ①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16일

⇒ **신상변동통보**(토·일요일 포함하지 않고 16일간 출장이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)

⇒ 위반시 행정조치 : '주의'(1-다)

# 04

##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?

4-1 박사학위 취득 후 당연전직 하여야 합니다.

4-2 '23년 편입자부터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
4-3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

4-4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
-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당연전직을 하여야 합니다.

\* 다만,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의무 복무기간에 미산입(영 제89조2항7호) 합니다.

- 당연전직·승인전직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(승인 전직은 14일) 이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추가로 연장한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.

-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.

## 4-1 박사학위 취득 후 당연전직 하여야 합니다.

의무적으로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

- ❖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원에게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
- ❖ 복무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 취소된 경우
- ❖ 복무중인 대학원이 휴교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복무 할 수 없는 경우

## '23년 편입자부터 복무 중 박사학위 4-2 취득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
학위취득 의무화

- ❖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,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
  - 편입된 날부터 2년(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)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편입이 취소
  -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(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)

병역법 제37조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, 그 기간 동안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
2.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

##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4-3 옮겨야 합니다.

-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
  - 이 경우 “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”란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
    - ▶ 영 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
    - ▶ 영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
    - ▶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

### 적용대상

- ※ '23.1.1. 편입자부터 적용

### 다른 업체로 옮기는 대기기간

- ※ 당연전직 사유 발생일 또는 전직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 (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 연장)
- ※ 최초 3개월의 전직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 (다만,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 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 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 (영 제89조2항7호) 합니다.)되나 추가되는 3개월의 전직 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됨
- ※ 전직대기기간 6개월 내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 편입취소
  - ※ 전직하지 않고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직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



# 05

##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나요?

- 5-1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.
- 5-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- 1일 근로기준시간은 8시간이며 의무복무기간 중 「근로기준법」을 준용하여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. 지각, 조퇴 등의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 휴가로 계산합니다.
-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틀어 30일 이내 병가는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초과 기간은 연장복무 해야 합니다.



## 5-1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휴가,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.

### 휴가

- ▶ 「근로기준법」 규정 준용 또는 학칙 등에 따름
- ▶ 「근로기준법」 또는 학칙 등에서 정한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, 그 기간은 연장복무

### 결근

- ▶ 1일 기준 근로시간 : 8시간(결근 일수는 연장복무)
  - ※ 근로시간은 사규·취업규칙 등의 업무의 시작시간부터 8시간. 다만, 사규·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시작 시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8시간을 기준으로 함
- ▶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)
- ▶ 8일 미만 무단결근 시 무단결근 일수와 무단결근일의 5배수 연장복무
  - ※ 학칙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음

### 지각, 조퇴

- ▶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기재 후 대학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
  - ※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 가능
- ▶ 지각·조퇴·외출(공무상 외출 제외)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간 휴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연장복무
- ▶ 무단 지각·조퇴·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과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추가하여 연장복무

### 병가

- ▶ 통틀어 30일 이내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초과기간은 연장복무
  - ※ 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·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
- ▶ 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제출

## 5-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### 병역처분 변경이란?

- ※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를 신청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고,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#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※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대학원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.
- ※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에는 신청한 날에 재신체검사 가능함
- ※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 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역이행안내 → 병무청 지정병원 → 지정병원 조회

### 구비서류

- ※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
- ※ 병무용진단서(병무청 지정병원 발행)
- ※ X-ray, CT,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있는 경우

###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처리

- ※ 신체등급 5급 : 편입취소하고 전시근로역 처분
- ※ 신체등급 6급 : 편입취소하고 병역면제 처분
- ※ 신체등급 1급 내지 4급 : 전문연구요원으로 계속 근무

# 06

##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?

- 6-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.
- 6-2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.

-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야간 또는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
- 수학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편입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

## 6-1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.

### 수학금지

- ▶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불가

### 수학금지 위반처벌 : 편입 취소 또는 연장 복무

##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. 6-2

### 수학금지 예외

- ▶ 야간,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

# 07

##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?

- 7-1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- 7-2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7-3 국외여행기간 중 허가목적대로 업무수행 등을 해야 합니다.
- 7-4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.

-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업무수행 또는 개인여행 등을 위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,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- 다만, 개인사유 단기 국외여행은 휴가 범위 내에서 허가하므로 이미 복무기간에 산입되어 상기 기간에 미포함됩니다.
-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목적 및 여행지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편입취소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

## 7-1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### 허가대상

- ▶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, 국외출장 등

### 허가신청 및 기간

- ▶ 관할 지방병무청에 허가신청서 제출
- ▶ 허가기간 : 모두 합하여 1년(개인사유 단기 국외여행 미포함)
- ▶ 의무복무 인정기간 : 모두 합하여 3개월(개인사유 단기 국외여행 미포함)

###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

- ▶ 병역지정업체 장의 추천서
- ▶ 출장명령서, 공문, 출장계획서 등 출장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## 7-2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
### 인정범위

- ▶ 해당분야 근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, 기술연수,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

### ▶ 공동연구

- 계약당사자 : 국외 외국기업, 외국 연구기관
- 계약형태 : 공동연구 계약/협약, 기술협력 협약
- 구비서류 : 공동연구계약서/협약서,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

### ▶ 기술연수

- 계약당사자 : 국외 외국기업, 외국 기관
- 계약형태 : 기술도입 계약, 기술협력 협약
- 구비서류 : 기술도입계약서, 기술협력협약서, 연구장비 도입계약서(기술연수사항 포함된 경우) 사본 1부

### ▶ 기술지도

- 계약당사자 : 국외 제품·기술수입기업, OEM 외국기업
- 계약형태 : 기술수출계약, 기술협력협약
- 구비서류 : 기술수출계약서, 기술협력협약서, 제품수출 계약서(기술지도사항 포함된 경우) 사본 1부

### 인정요건

- ▶ 연구내용 : 관련업무와 일치여부
- ▶ 경비부담 :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부담(개인부담은 복무 기간 불인정)
- ▶ 연구성과 :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소유(개인소유는 복무 기간 불인정)
- ▶ 계약당사자 :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해당 국외연구기관의 장(연구요원과 국외연구소 직원 등의 개인 간 계약체결은 복무 기간 불인정)

## 7-3 국외여행기간 중 허가목적대로 업무수행 등을 해야합니다.

##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7-4 penalty 취소됩니다.

###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여행 시 준수사항

- ❖ 국외연수, 업무출장 등 허가목적대로 업무수행
- ❖ 허가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 복무사항 등
  - 국외체재 복무관리를 위하여 현지 책임관을 정·부제로 복수 지정·운영(단, 현지 관리자금 인원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단수로 운영)
  - 업무수행내역 등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
    - \* 국외체재기간 중 업무수행상황부를 매일 작성하여 주단위로 현지책임관의 확인을 거쳐 2주마다 제출
    - \* 국외체재기간 만료 시 국외체재기간 연구성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귀국 후 제출
- ❖ 국외 체재국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적용
  - \* 단기간 국외체재 등 국외여행허가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

### 행정처분 대상(허가위반 사항)

- ❖ 국외여행(연장)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경우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
- ❖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

#### TIP

### 공동연구·기술연수·기술지도 국외여행 허가 신청시 유의사항

- 여행목적 : 공동연구, 기술연수,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
- 병역사항: 35세(군 전공의수련과정정기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)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을 것
- 해당분야 : 연구·연수·지도 내용이 전문연구요원의 해당(전공)분야와 관련성
- 경비부담 : 공동연구의 경우는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 원칙
  - \*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
- 연구성과물 소유권 : 공동연구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
  - \* 전문연구요원 개인 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
- 공동연구기간 및 계약(협약)유효기간 확인
- 협약 체결당사자 :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장
  - \* 전문연구요원과 교수등 개인간 계약체결은 개인연수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



# 08

##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?

- 8-1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.
- 8-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- 8-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.

-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.
- 군사교육소집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받게 됩니다.
- 질병, 가사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

## 8-1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.

### 대상자 선발은 이렇게 합니다.

- ▶ 편입한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
- ▶ 편입일자가 빠른 순,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
  - ※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제도 활용 가능  
(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 <http://www.mma.go.kr>) →  
병무민원 → 전문/산업 → “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  
군사교육소집 일자 본인선택” 화면)

### 군사교육소집 실시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는

#### 다음과 같습니다.

- ▶ 전직대기 중인 경우(전직대기 전 통지서 받은 사람, 잔여 의무 복무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가능)
- ▶ 국외근무중인 경우, 30일 이상 병가중인 경우

### 군사교육소집 제외 및 미실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▶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

- ▶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
- ▶ 신체등급 4급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
  - 가.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 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
  - 나.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
  - 다.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
  - 라.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
- ▶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 등에서 기본군사훈련(15일)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
- ▶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

## 8-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### 군사교육소집 선발자 인터넷 예고

- ▶ 병무청 누리집(<http://www.mma.go.kr>) → 병무민원 → 전문/산업 → 전문/산업/승선 군사교육소집 일자/부대조회

### 군사교육소집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▶ 질병, 심신장애, 주요업무 수행
- ▶ 본인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등
- ※ 연기원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

## 8-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.

### 미 교육자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.

- ▶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편입취소
- ▶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어도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(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복무만료 처분)

군사교육소집 중에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(퇴영)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▶ 훈련 기간 중 직계 존·비속이 사망한 경우
- ▶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 되는 경우
- ▶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
- ▶ 그 밖에 군사교육소집부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

TIP

### 참고사항

- 전문연구요원이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의무복무 중 편입이 취소 되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임명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.
- 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 시킬 수 있으며 퇴영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 합니다.
-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만료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합니다.
- 전문연구요원이 군사교육소집(기초군사훈련)기간 중 입게 된 부상·질병·또는 장애(군인사법에 의한 공상으로 인종된 경우)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치료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됩니다.

# 09

##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- 9-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됩니다.
- 9-2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.

-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고, 의무복무 기간 계산은 편입일자 부터 포함하며 의무 복무 중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연장복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

## 9-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됩니다.

##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9-2 연장복무하게 됩니다.

### 의무복무기간 계산

- ▶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날부터 산입

###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유

- ▶ 휴직(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·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함) 또는 정직 기간
- ▶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(질병으로 인하여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포함) 또는 모두 합하여 3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
- ▶ 전직대기기간 3월을 초과하는 기간
- ▶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연장복무토록 결정된 기간
- ▶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(5배수 연장복무)
- ▶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
- ▶ 기타 결근기간 등

# 10

## 어떤 경우에 편입취소 되나요?

- 10-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.
- 10-2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의무부과 됩니다.
- 10-3 편입취소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.

-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해당 대학원의 해당 분야에서 연구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 편입이 취소됩니다.
-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해야 합니다.



## 10-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.

## 편입이 취소되면 10-2 병역의무부과 됩니다.

### 취소사유

- ▶ 해당 대학원의 해당분야에서 연구복무하지 아니한 경우
- ▶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
- ▶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
- ▶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
- ▶ 의무복무기간을 35세(의무사관후보생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37세)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
- ▶ 전문연구요원이 수학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▶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
- ▶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제적·중도포기 등 과정에서 제외된 경우
- ▶ 당연전직 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
- ▶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

### 의무부과

- ▶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

### 잔여 복무기간

- ▶ 남은 복무기간은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
- ▶ 계산 방법

- 현역병 입영 대상

$$\frac{\text{종전의 의무복무기간} - \text{복무한 일수}}{\text{종전의 의무복무기간}} \times \text{현역병 의무복무기간}$$

-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

$$\frac{\text{종전의 의무복무기간} - \text{복무한 일수}}{\text{종전의 의무복무기간}} \times \text{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}$$

### 참고사항

- ▶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

## 복무단축 예외

- 부·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·순직자나 전·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 사람의 의무복무 기간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혜택 제외

## 10-3 편입취소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.

### 유보대상(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는 대상)

-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,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사람

### 유보절차

-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
- 구비서류 :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 또는 소송제기 서류

### 유보결과 처리

- 적법,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: 편입취소 후 병역의무부과
- 위법,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: 복직 또는 전직

### TIP

####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

-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▶ 편입취소

### TIP

#### 유의사항

- 화해의 경우 :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전문연구 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당해 구제신청 소요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. 다만, 업체장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화해한 경우 구제신청 소요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.
- 취하의 경우 : 취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원칙 단, 업체와 의무자가 합의하여 복직을 전제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당해 구제신청 소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각하 또는 기각의 경우 :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

# 11

## 복무만료 후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?

11-1 예비군훈련 시기는 이렇습니다.

11-2 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 
확인하나요?

- 전문연구요원은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.
- 「병역법」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이므로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동원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합니다.
- 다만, 예비군 관련방침 상 동원예비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일반예비군훈련을 받게 됩니다.



# 11-1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.

# 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11-2 어떻게 확인하나요?

## 훈련대상 및 시간

(단위:시간)

구분		계	동원 훈련	동원 미참자 훈련	기본 훈련	작게 훈련	예비 시간
신규 전역자(간부/병)		160					160
연 차	동원지정자	160	2박3일				132
	1~4 년차			4일 (32H) 또는 2박3일			128 (132)
	동원미지정자	160					
	5~6 년차				8H	12H	140
	동원미지정자	160					
7~8년차		160					160
간 부	동원지정자	160	2박3일				132
	1~6 년차			2박3일			132
	동원미지정자	160					
7년차~연령정년		160					160

예비군복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, 인터넷 홈페이지,  
모바일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.

### ☞ 전화문의

국방부 : 국번없이 1577 - 9090

병무청 : 국번없이 1588 - 9090

### ☞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

예비군 홈페이지 : [www.yebigun1.mil.kr](http://www.yebigun1.mil.kr)

1. 지역예비군훈련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

나의 훈련정보, 훈련신청/연기/보류/해소와 전화번호  
등 안내

### ☞ 병무청 홈페이지 : [www.mma.go.kr](http://www.mma.go.kr)

1. 개인별 동원훈련 일정 확인

병무청 누리집 → 병무인원 → 동원/예비군 →

병력동원훈련소집 → 동원훈련 일자/교통편 조회

2. 동원훈련 관련 안내

병무청 누리집 → 병역이행안내 →

예비군편성/병력동원 → 병력동원훈련소집



